

2026년 제1회 금산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정책지원관) 임용시험 공고

2026년 제1회 금산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정책지원관)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6일

금산군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



1.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 분야	임용 직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 시간	담당직무 내용
정책 지원관	지방행정 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2년	주 40시간	▪조례의 제·개정 및 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▪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▪의원의 군정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▪의원 연구단체,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개최 및 자료 작성 등 지원 ▪그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과 의정활동 지원 등

※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횡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횡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 및 제27조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

3. 응시자격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응시 연령: 18세 이상(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국 적: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 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○ 선발 예정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임용분야	응시자격요건
정책지원관	<p>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<p>◆ 관련분야 학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학, 법학, 정치외교학, 정책학 등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과 - 그밖에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 분야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과 <p>◆ 관련분야 실무경력*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**, 대학교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연구소 등에서 지방행정, 예산, 결산, 입법지원, 법제 관련 연구·조사·분석·감사 분야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- 그 밖에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 분야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<p>*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 인정(인턴 및 사무보조, 프리랜서 등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,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</p> <p>**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(cleaneye.go.kr),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기준</p>

※ 참고사항

- 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)
- ※ 관련(직무)분야 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.
 -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(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 -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예: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해야 함.
- ※ 전임근무(1일 8시간)가 아닌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(예시: 주20시간 근무)되어야 하며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.
- ※ 학위취득은 졸업증명서(학위증명서) 상에 기재된 졸업일자(학위수여일자)를 기준으로 함.
- ※ 학위취득 과정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.
- ※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,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해야 함
 - 보완서류 중 “폐업사실증명서,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” 중 1종과 “소득금액증명서”는 필수 제출

4. 근무조건 및 보수

- 근무조건 : 평일 09:00~18:00, 주 40시간(1일 8시간)
-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임용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경력, 자격,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.

[2026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및 [별표 13])]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일반임기제 7급(상당)	70,782천원	<u>50,272천원</u>

- ※ 연봉 외 수당 등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방법

□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시험 공고	2026. 7. 6.(월) ~ 7. 19.(일)	금산군의회 홈페이지
응시원서 접수	2026. 7. 20.(월) ~ 7. 22.(수)	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7. 28.(화) [예정]	금산군의회 홈페이지
면접 시험	2026. 8. 4.(화) [예정]	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(임용후보자 등록 안내)	2026. 8. 6.(목) [예정]	금산군의회 홈페이지
임용시기	2026. 8월 중 [예정]	

※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, 금산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geumsancouncil.go.kr>) 「공지사항」에 공고

※ **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**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

※ 최종합격예정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

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응시원서,이력서 등)을 출력하여 사용

나. 접수기간 : 2026. 7. 20.(월) ~ 7. 22.(수) / 3일간

다. 접 수 처 :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

라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1) 인터넷 접수 불가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
2) 응시수수료 : 7급 7,000원

※ 충청남도 금산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
※ 대리접수(가능)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【 방문 접수 】

- ❖ 접수장소: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팀 041-750-2822)
- ❖ 접수시간: 09:00~18:00 /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 - 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
- ❖ 응시수수료: 충청남도 금산군 수입증지 구입
(금산군청 1층 민원지적과에서 판매)

【 등기우편 접수 】

- ❖ 주 소: (우32733)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53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(인사담당자)
- ❖ 원서접수 마감일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
- ❖ 임용분야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
 - ※ 대한민국 ‘정부수입인지’ 사용 불가
- ❖ 우편봉투 외부에 ‘금산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’문구 표기
- ❖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(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)
- ❖ 우편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화 요망(의정팀 041-750-2822)

□ 1차 서류전형(자격기준 등 적격심사)

- 제출서류의 구비여부,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,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임용예정 분야의 관련성, 경력기간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.
 - 단, 상기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결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.
- ※ 결정기준 ① 1개 기관에서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
② 전체 경력 중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

□ 2차 면접시험(개별심사)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
- 평정항목 :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
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)
-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 로 평정하였거나,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 로 평정한 경우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0조의3)
-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 합산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임용후보자 등록 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최종 임용자격이 부여됨.

□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
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용 포기, 결격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※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별지 2호 서식) 1부
 -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(7급 7,000원)로 충청남도 금산군 수입증지 부착
 - ※ 금산군청 1층 민원지적과에서 수입증지 구매
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- 이력서(별지 3호 서식)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s.or.kr>」 발급) 등 다른 증빙자료 제출
- 자기소개서(별지 4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5호 서식) 1부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 6호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7호 서식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지 8호 서식)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9호 서식) 1부
-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(별지 10호 서식) 1부
-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 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업무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-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
 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 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“경력사실 확인 증명서” 추가 제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1부
 - ※ 경력기간 검토용으로 해당 경력기간이 모두 조회되도록 발급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인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나. 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서식 10) 1부
- 학사학위 증명서 1부(응시자격요건 1번에 해당하는 경우)
 - ※ 사본 제출 가능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등

7. 재공고 및 변경공고

-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금산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공고 합니다.

8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 이내 탈락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합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환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)에는 원서 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, 허위사실 기재 및 서류 위·변조의 행위를 한 사람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금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(☎ 041-750-282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응시자 제출서류 각 1부

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